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-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(국비)

1 기본현황							
□ 사업개요					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				
사업위치							
총사업비	총 60,000천원	(국비)(시30,000천원30	비] ,000천원	(보조율) 50 %	[구비]		
사업내용	○ 폭력피해 이주	여성시설 기능보장	}				
사업형태	✓직접수행 □자	시단체 보조 □민긴	<u></u> 나이전 □	출연출자 [□민간위틱	- □기타	
사업시행주체	사업시행주체						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							
신규 계속 투자	심사 학술용역 기학	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전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	
경상 투자							
□ 사업 담당자							
실·국	부서명	과장		팀장		무관	
여성가족정책실	여성정책담당관	배현숙 2133-5005	_	태명 3-5034		성신 -5037	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	(X-)	(x30,000) 60,000	(x30,000) 60,000	(X-)	(X-)
민간자본시 조(이전자		(X-)	(x25,000) 50,000	(x25,000) 50,000	(X-)	(X-)
민간대행시	- 업비	(X-)	(x5,000) 10,000	(x5,000) 10,000	(X-)	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	세부 산출내역		
민간자본사업보조(이 전재원)	○ 쉼터 및 그룹홈 기능보강 50,000,000원		=	50,000천원
민간대행사업비	○ 그룹홈 기능보강비 10,000,000원		=	10,000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○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(7개소)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장

□ 사업근거
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제7조의 2

□ 사업내용

○ 위 치 : 서울지역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(비공개)

○ 규 모: 7개소

○ 사업기간 : 2017.1~12

○ 사업내용 : 보호시설의 안전환경 기능보강

○ 총사업비 : 60,000천원

□ 사업추진절차

○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의거,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수요조사에 따른 추진

□ 2017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60,000	
안전기능보강	2017.01~2017.12	60,000	안전환경 기능보강비 교부

(단위 : 천원)

4 사업효과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결혼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